

울산지방법원 2020. 8. 28 선고 2019가단511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법조

담당변호사 김규철,전은수

피 고 B

변론 종결 2020. 7. 17

판결 선고 2020. 8.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4,896,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년 말경 지인인 C로부터 주식 관련 좋은 투자처가 있다는 소개를 받고 2019년 2월경 '이'의 E센터장인 F, G센터의 센터장 겸 본부장인 피고를 만나 설명을 듣고 D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투자금으로 합계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피고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는 송금받은 금액을 그 즉시 H, I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내역		피고가 H 등에 송금한 내역	
날짜	금액	날짜	금액(수취인)
2019. 2. 18.	1,024만 원	2019. 2. 18.	1,024만 원(H)
2019. 2. 27.	5,000만 원	2019. 2. 27.	5,000만 원(H)
2019. 3. 4.	376만 원	2019. 3. 4.	376만 원(I)
2019. 3. 12.	1,000만 원	2019. 3. 12.	1,000만 원(I)
2019. 4. 3.	200만 원	2019. 4. 3.	200만 원(I)
2019. 4. 18.	400만 원	2019. 4. 18.	400만 원(H)

나. 원고는 D로부터 위 각 투자금에 대한 D패밀리, D추천, D출근이라는 명목으로 2019. 2. 3.

1,000원, 2019. 2. 20. 121,880원, 889,440원, 966,800원, 2019. 3.

5,323,740원, 2,591,360원, 5,801,800원, 2019. 3. 20. 434,950원, 6,768,800원,

160,960원, 2019. 4. 5. 32,030원, 6,962,200원, 48,150원을 각 송금받았는데, 그 합계는

25,103,110원이다.

다. 1) 2019년 4월경 D의 투자자들 다수가 H, J(가명 K) 등을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2019. 4. 29.경 이 사건 투자금과 관련하여 피고, F, H, J(가명 K)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2) H, J 등(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불법다단계회사인 D를 조직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으로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 상당 금액을 편 취하였다는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3025 등) 그 재판이 진 행 중이다.

3)피고는 원고의 고소에 따라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에 대한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2019. 12. 27. 증거부족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다만 방문판 매등에관한법률위 반죄 와 유사수신 행위 의 규제 에관한법 른위 반죄로 약식 기소되 어 2020.4. 14. 울산지방법원 2019고약13625호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 다가 이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3, 7내지 9, 12내지 14호증,을 제2내지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D 울산통합센터의 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원고 등 투자자들을 속여 유치 하고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하거나 피고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원고는 피고의 투자권유에 속아 피고의 계좌로 합계 8,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그 중 25,103,110원만을 돌려받았을 뿐 54,896,89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금액 상당의 손 해를 입었으므로,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인들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피고가 D의 투자금 모집을 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 이 없고, 피고 또한 D에 투자한 피해자이다.

원고는 F, J로부터 설명을 듣고 D에 투자 한 것이고,피고는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모두 H 등에게

송금해 주었을 뿐 피고 가 이득을 취한 바도 없다.

나. 판단

피고가 G센터의 센터장 겸 본부장이었던 사실, 피고의 설명을 듣고 원고가 D에 투자하기 위하여 피고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는 지인인 C의 소개로 D를 알게 된 점, 피고가 피고인들과 함께 사기방조,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 를 받았으나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즉시 피고인들과 관련된 계좌로 송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가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입금받을 당시 투자자들이 D에 투자하더라도 별다른 수익을 얻을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원고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이를 편취할 목적으로 원고에 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송금받았다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피고인들과 사기 범행의 공동불법행위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 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강경숙